

## 교내 설치물 관리에 관한 내규

제정 2013. 11. 04

개정 2016. 03. 09

**제1조(목적)** 이 내규는 쾌적한 교육환경의 조성을 위하여 홍보 및 여러 가지 목적을 가지고 설치된 교내 설치물의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내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홍보게시물”이라 함은 상시 또는 일정기간 계속하여 학생과 교직원들이 자유로이 통행할 수 있는 지정된 장소에서 볼 수 있는 것으로써 현수막, 벽보,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한다.
2. “게시시설”이라 함은 게시대, 게시판과 기타 공작물로서 게시물을 게시 또는 표시하기 위한 시설을 말한다.
3. “설치물”이라 함은 특별한 목적으로 일정기간 교내에 설치된 시설물로 천막, 간이시설 등을 말한다.
4. “지정게시판”이라 함은 관련규정에 의하여 필요한 사항을 홍보할 수 있도록 대학에서 설치한 게시판을 말한다.

**제3조(관리책임자)** ① 각 행정부서 및 외부기관에서 설치하는 교내 설치물의 관리책임자는 사무처장으로 한다.

**제4조(제한사항)** 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되는 경우 설치를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1. 본교의 교육 목적에 반하거나 이미지를 실추시키는 내용
2. 지적재산권을 침해하거나 타인의 업무를 방해하는 내용
3. 법령에 위반되는 내용
4. 상업광고 등 영리를 목적하는 내용
5.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개인의 신상정보에 관한 내용
6. 지정 게시판 또는 게시시설 이외에 장소에 설치한 경우
7. 게시기간이 경과된 내용
8. 관리책임자에 의해 허가되지 아니한 내용

② 1항의 각호의 1에 해당되거나 허가되지 않은 게시 및 설치물은 자진 철거를 명령 후 이행하지 않을시 학교당국에서 철거하여야 한다.

**제5조(범위)** ① 설치물을 게시 및 설치할 수 있는 행사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학교정책 공지 및 홍보
2. 본교 내에서 개최되는 세미나 및 이에 준하는 행사
3. 입시 홍보 및 취업 관련 행사
4. 기타 관리책임자의 허가를 받은 행사

**제6조(설치장소)** ① 삭제

- ② 홍보게시물 및 설치물은 은 학교당국에서 정한 장소에만 설치할 수 있다.
- ③ 대학정문에는 현수막을 부착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7조(기간)** ① 홍보게시물의 게시기간은 1주일 이내로 한다. 단 부득이한 경우 관리책임자의 허가를 받아 연장하며 전체기간은 2주일을 초과할 수 없다.

② 설치물은 사전에 설치기간을 관리책임자와 협의하여 정하여야 하며, 관리책임자가 철거를 명할시 즉시 처리해야 한다.

**제8조(허가)** ① 모든 홍보게시물 및 설치물은 사전 검인을 받은 후 설치하여야 한다.

- ② 설치물을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서식 제1호의 설치물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 ③ 사전 검인은 사무처 총무부에서 담당을 하며, 위의 신청서를 접수하고 게시물의 내용 등 제반사항을 검토하여 2일 이내에 신청자에게 심사 결과를 통보해야 함을 원칙으로 한다.
- ④ 홍보게시물 및 설치물을 설치한 개인 및 단체는 정한기간이 종료된 이후 해당 게시물 및 설치

물을 자진 철거하여야 하며, 자진 철거되지 않거나 본 규정에 위반되는 게시물 및 설치물은 관리책임자가 임의로 철거할 수 있다.

**제9조(학생관련 홍보게시물)** 학생관련 홍보게시물은 본교 「학생홍보물게시에관한준칙」에 의거한다.

**부칙** (총무부-979, 2013.11.4.)

이 내규는 2013년 11월 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총무부- 275, 2016.03.09)

이 내규는 2016년 3월 9일부터 시행한다.

